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부에 첨단기술기반의 민·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산업통상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3. 4. ~ 3. 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810”을 “81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800”을 “801”로 하며,
3급 또는 4급 이하 “749”를 “75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(제43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810</u>	<u>81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800</u>	<u>80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49</u>	<u>750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4